

부산지방법원 2022. 7. 20 선고 2021가합5154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3. C

4. D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정성

담당변호사 신강식, 박준상

피고E주식회사

변론 종결2022. 5. 25.

판결 선고2022. 7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A에게 189,000,000원, 원고 C에게 186,000,000원, 원고 B에게 185,000,000원, 원고 D에게 189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0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손해배상책임의 성립

가. 인정 사실

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제7호증(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.

1) 원고들은 2020. 1.경부터 2020. 6.경까지 피고가 부산 부산진구 F외 3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 중 아래 표 기재 호실(이하 '이 사건 각 호실'이라 한다)에 관한 분양계약(이하 '이 사건 각 분양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A	2020.2.4.	G호	189,000,000원	110,000,000원
B	2020.6.26.	H호	185,000,000원	70,000,000원
C	2020.2.7.	I호	186,000,000원	100,000,000원
D	2020.2.25.	J호	189,000,000원	110,000,000원

2)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전액 납입하였으나, 피고는 2021. 8. 25.경 원고들이 계약한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음을 확인하여 주었다.

나. 판단

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2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피고의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됨에 따른 이행이익배상으로 이행불능당시 이 사건 각 호실의 시가로 추인되는 '할인전 분양대금'란 기재 각 금액¹⁾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

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1. 10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조정민

판사이상언

판사장윤실

1) 원고들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할인전 총분양대금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할인전 총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였다.